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3나65183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3나6518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3가단503756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변론 종결 2024. 7. 2.

판결 선고 2024. 9. 10.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3가단5037564 판결

주문

-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피고와 B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8. 2.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97,1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나. 피고는 원고에게 97,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및 원고의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하는 부분", "3. 고치는 부분"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피보전채권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이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본다.

국세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2호)이고, 위 표1 기재 각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각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진행한다. 국세기본법 제28조 제3항 제5호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한 경우 위 소멸시효가 정지된다.

위 표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부기한 중 가장 이른 것은 2018. 4. 30.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조세채권은 원고의 2023. 2. 7. 이 사건 소 제기로 인하여 그 시효 진행이 정지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의 제9면 제7행 내지 제10면 제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으로 하여 임차인 K이 임차하여 살고 있었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승계하였다. 위 K이 위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2018. 3. 8. 확정일자를 받은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었던 이 사건 1, 2, 3근저당권은 2018. 3. 13.(또는 2018. 3. 27.)에 말소되었으므로, 위 K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최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액배상금 산정에 있어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1억 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는 2014. 8. 13. K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K이 위 B에게 위 보증금 1억 원을 실제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과 가장 가까운 2022. 1. 1.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97,1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가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가액과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97,100,000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이 된다.』

○ 제1심판결의 제10면 제13행 내지 같은 면 제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97,100,000원의 범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97,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오연정

판사안승호

판사최복규

별지